

# 고성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 관한조례안

의안 번호	623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0. 3. 23.

제 출 자 : 고성군수

## 1. 제안이유

주민의 행정참여 기회확대와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된 지방자치법(제13조의4)에 의거 주민감사청구제의 시행에 따라 주민이 감사를 청구하되 감사청구 주민수를 20세 이상의 주민총수의 50분의1의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이를 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골자

주민이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주민총수의 범위 지정(안 제2조)

## 3. 참고사항

- 도 감사 16800-10088(2000. 2.3)호 - 주민감사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표준안
- 법령근거 : 지방자치법 제13조의4(주민의 감사청구)
- 입법예고 : 필요

## 4. 본 문 : 붙임과 같음.

## 고성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 관한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3조의 4제1항에서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한 주민감사 청구인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감사청구 주민의 수) 법 제13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서하여야 하는 20세이상의 주민의 수는 법 제13조의3제8항의 규정에 의한 20세이상 주민총수의 100분의1이상 이어야 한다.

제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